

보도자료1
(요약본)

이 자료는 2021년 1월 6일(수) 15:00 보도부터
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

2021. 1. 6.

기 획 재 정 부

목 차

I .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	1
II . 주요 개정내용	2
1.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	
(1) 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	2
(2) 소비활력 제고	4
(3) 혁신성장 지원 및 성장동력 강화	5
2.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·공정 강화	
(1) 서민·중소기업 지원	10
(2) 일자리 지원	12
(3) 과세형평 제고	13
3.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	
(1) 조세제도 합리화	16
(2) 납세자 권익 보호	22
(3) 납세 편의 제고	23
<참고> 시행령 개정안 세수효과	26
III . 추진 일정	27

기본방향

- ◇ '20년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세부사항 마련
- ◇ '21년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

1.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

-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관련 세부내용 규정
- 5G 기지국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
- 뉴딜 인프라펀드 및 공모 투융자펀드 세제지원 세부내용 규정
-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
-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
-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·분석 비용에 대한 R&D비용 세액공제 적용
- 신성장·원천기술 R&D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
-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
- 신탁세제 개편 관련 세부내용 규정
- 금융투자소득 신설 관련 세부내용 규정

2.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·공정 강화

-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개편 관련 세부내용 규정
- 생산직 근로자 야간수당 등 비과세 범위 확대
- 산학협력 강화 및 대학생 취업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
- 근로·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
-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정
-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차액결제거래(CFD) 추가
-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 관련 세부내용 규정
-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 확대
-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

3.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

-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공무원 포상금 추가
-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·골동품 양도소득 기준 마련
- 투자·상생협력촉진세제 재설계
- 해외금융계좌 신고 관련 과태료 규정 합리화
- 공익법인 관련 제도 개선
-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 상향
-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맥주·탁주의 주세율 조정
- 공직퇴임관세사 수입 제한 관련 세부내용 규정
- 경정청구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
- 탈세제보 포상금 중간지급 규정 신설
-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대상자료 범위 확대

II. 주요 개정내용

1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

1) 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

□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관련 세부내용 규정 (조특령)

< 법률(조특법§24) 개정내용 >

◇ 지원대상·지원수준 등이 상이한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·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* 신설

- * ① (세제지원 대상자산 범위 대폭 확대) 열거된 특정시설(Positive 방식)
→ 기본적으로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(Negative 방식)으로 확대하되,
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
- ② (투자증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) 당기투자분에 대한 기본공제(대기업 1% / 중견 3% / 중소기업 10%)에 더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(모든 기업 3%) 부여
- ③ (신산업 투자 지원 우대)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공제를 적용(대기업 3% / 중견 5% / 중소기업 12%)

· 대상 업종, 세액공제 제외 사업용 자산의 범위,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 및 판정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

- (대상 업종) 부동산임대·공급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
- (세액공제 제외 사업용 자산) 토지, 건물, 차량 등은 원칙적 제외
 - 다만, 건물·차량 등에 해당하더라도, 종전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*과 업종별 필수적 사업용 자산**은 공제 허용(시행규칙 개정사항)
 - * 연구·인력개발시설,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전시설, 안전시설, 근로자복지증진시설 등
 - ** (예) (관광숙박업) 건축물 및 부속 시설물, (건설업) 굴삭기 등 중장비 (운수업) 차량·운반구, (도소매업·물류업) 운반용 화물자동차, 창고시설 등
- (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) 신성장·원천기술 범위 확대 개편*과 연계하여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(시행규칙 개정사항)
 - * 첨단메모리반도체 제조·설계, 이산화탄소 활용 등 25개 기술 추가
- ※ 종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*은 폐지
 - * ①매출액 대비 R&D 비중이 2% 이상 + ② R&D 비용 중 신성장 R&D 비중이 10% 이상(또는 자체개발 특허권 보유) + ③상시근로자 수 유지

□ 5G 기지국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(조특령)

※ 「'21년 경제정책방향」에서 既 발표('20.12.17)

-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운용에 필요한 설비*를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포함하여 우대 세액공제율(+2%p) 적용

*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·전송·전원설비

□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지원 세부내용 규정 (조특령)

< 법률(조특법§26의2) 개정내용 >

- ◇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에 투자시 투자금액 2억원까지 배당소득 9% 분리과세
▸ 세제지원의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

- (대상 펀드)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상 부동산투자회사, 「민간투자법」상 투융자펀드, 「자본시장법」상 부동산 펀드 및 특별자산펀드

- (투자대상 자산)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*에서 뉴딜** 인프라로 심의·인증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

*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 예정

** 정보통신산업·녹색산업·기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산업분야

- (의무투자비율) 뉴딜 인프라에 50% 이상 투자(1년간 투자비율을 평균하여 판정)

□ 공모 투융자펀드 세제지원 세부내용 규정 (조특령)

< 법률(조특법§27) 개정내용 >

- ◇ 「민간투자법」에 따른 공모 투융자펀드에 투자시 투자금액 1억원까지 배당소득 14% 분리과세
▸ 세제지원의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

- (투자방법) 공모 투융자펀드 투자전용계좌를 통해 투자해야 하고, 전용계좌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

□ 적격 물적분할·현물출자의 사후관리 예외사유 확대 (법인령)

- 기업 구조조정 지원 확대를 위해 적격 물적분할·현물출자 이후 주식·자산 처분시에도 과세이연이 지속되는 “부득이한 사유” 확대*

* (현행)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‘최초로’ 적격 구조조정

(추가) 완전모자회사 관계가 유지되는 적격합병·분할·물적분할·현물출자, 주식 및 관련 자산·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적격분할·물적분할

2) 소비활력 제고

□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 (법인령, 소득령)

※ 「'20년 세법개정안」에서 既 발표('20.7.22.)

-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기준금액 상향 : 1만 원 이하 → 3만 원 이하

□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 (법인령, 소득령)

※ 「'20년 세법개정안」에서 既 발표('20.7.22.)

-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의 기준금액 상향 : 연간 3만 원, 개당 1만 원 이하 → 연간 5만 원, 개당 3만 원 이하

3) 혁신성장 지원 및 성장동력 강화

□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·분석 비용에 대한 R&D비용 세액공제 (조특령)

※ 「'20년 세법개정안」에서 既 발표('20.7.22.)

○ (현 행) 연구원 인건비·재료비·위탁 연구개발비 등 연구개발비에 대해 R&D비용 세액공제(중소 25%, 중견 8~15%, 대기업 0~2%) 적용

○ (개 정) 연구개발비 범위에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·분석 비용* 추가

* 「발명진흥법」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(특허사무소 등)에 지출한 특허 조사·분석 비용

□ 신성장·원천기술 R&D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(조특령)

○ (현 행) 미래형 자동차·인공지능 등 12개 분야 223개 기술에 대해 신성장·원천기술 R&D 비용 세액공제* 적용

* 일반 R&D(중소 25%, 중견 8~15%, 대기업 0~2%)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(중소 30~40%, 중견·대기업 20~30%) 적용

○ (개 정) 디지털·그린 뉴딜 관련 기술을 신성장·원천기술 대상에 추가하는 등 12개 분야 240개 기술로 개편

- (디지털 뉴딜) ICT 기반의 디지털 혁신 지원을 위해 첨단 반도체, 빅데이터 등 관련 기술 9개* 추가

* 첨단 메모리반도체 및 전력 반도체 설계·제조 기술, 데이터 비식별화 기술 등

- (그린 뉴딜) 저탄소·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 저감,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기술 12개* 추가

*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, 수소액화플랜트 핵심부품 설계 및 제조기술 등

- (의료·바이오) 신체기능 보조 의료기기 개발 기술, 식품용 기능성물질 생산 기술 등 4개 추가

- (제외) 기술개발에 따른 상용화, 세제지원 실효성 저조 등으로 인해 신성장·원천기술에 적합하지 않는 8개 기술*은 제외

* 인포콘텐츠 기술, 막소재 및 막모듈 기술, 고성능 부직포 제조 및 활용 기술 등

□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 (조특령)

※ 「'20년 세법개정안」에서 既 발표('20.7.22.)

- 외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제도*의 ①인력 요건은 강화하되, ②취업기관 범위는 확대

* 5년간 소득세 50% 감면(소재·부품·장비 기업 근무시 3년간 70%, 2년간 50%)

- (인력 요건) 외국인 연구원 → ①이공계 등 학사 학위 + 5년 이상 R&D 경력 또는 ②이공계 등 박사 학위 + 2년 이상 R&D 경력
- (취업기관) 외국인투자기업 R&D 센터 → 기업부설 연구소·연구개발전담부서,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대학·대학부설 연구기관

□ 신탁세제 개편 관련

① 위탁자 과세 신탁의 요건 구체화 (소득령)

< 법률(소득법§2의3) 개정내용 >

- ◇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의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수익자가 아닌 위탁자에게 과세
- ▶ 위탁자에게 과세하는 신탁의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

-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·지배*하고, 수익자를 원본의 이익에 대해서는 위탁자 본인, 수익의 이익에 대해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설정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과세

* 위탁자가 계약 해지권, 수익자 지정·변경권, 신탁 해지시 신탁재산 귀속권 등 보유

② 법인세 과세 신탁의 요건 구체화 (법인령)

< 법률(법인법§5) 개정내용 >

- ◇ 「신탁법」에 따른 목적신탁, 수익증권발행신탁, 유한책임신탁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 방식 선택 허용
- ▶ 법인세 과세 신탁이 허용되는 신탁의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

- 신탁의 수익자가 2인 이상*으로 구성되고,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·지배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 과세 선택 허용

*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1인 및 특수관계인으로만 구성된 경우는 제외

③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위탁자 과세 요건 구체화 (부가령)

< 법률(부가법§3) 개정내용 >

- ◇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계약당사자가 되는 수탁자로 변경
- ◇ 다만,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의 신탁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에게 과세
 - 위탁자에게 과세하는 신탁의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

- 부동산개발사업 목적 신탁으로서 수탁자가 개발사업비 조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(관리형토지신탁) 및 수탁자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등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대행자인 경우 위탁자 과세

* 시행시기: '22.1.1.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

□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 관련 (소득령) ※ 시행 '23.1.1.

① 집합투자기구(펀드)로부터 이익 과세체계 개편

<현행 과세제도>

- (신탁형) 분배금, 집합투자증권 양도·환매 → 배당소득
- (회사형) 분배금 → 배당소득 / 집합투자증권 양도 → 양도소득

- (펀드의 분배금) 펀드에 귀속되는 소득 원천별로 구분하여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*

* 금융투자소득이 원천인 소득을 분배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, 그 외 소득을 분배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

- (집합투자증권의 양도·환매 소득)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

②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계산방법

- 과세표준 = (금융투자소득금액 - 금융투자이월결손금) - 기본공제

- (금융투자소득금액)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과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으로 구분하여 계산 후 합산

- (이월결손금 공제) 금융투자소득금액 중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에서 우선 공제하고, 잔액은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공제

- (기본공제 적용)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,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각각 5,000만 원, 250만 원 공제 적용*

* (금융투자소득금액 - 금융투자이월결손금)을 한도로 공제

③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액 규정

< 법률(소득법§87의18) 개정내용 >

◇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액

- ① 다음의 소득금액 : 5,000만 원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
 -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
 -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
- ② ① 외의 금융투자소득금액 : 250만 원

- (국내 상장주식등 기본공제액) 5,000만 원
- (공모 국내주식형 펀드 요건) 자산총액의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으로 운용하는 펀드

④ 주식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도입

< 법률(소득법§87의12) 개정내용 >

◇ 금융투자소득 시행 전 비과세 주식등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도입

▸ 구체적인 계산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

- (대상)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주권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, 장외(K-OTC)시장에서 양도하는 중소·중견기업의 소액주주 주식
- (의제취득가액) '22.12.31일 공표하는 최종시세가액과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

⑤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방법

< 법률(소득법§148의2) 개정내용 >

◇ 금융회사가 지급하는 금융투자소득은 반기별로 원천징수

▸ 구체적인 원천징수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

- (원천징수 소득금액) 금융회사가 관리하는 계좌보유자별로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과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으로 구분하여 계산
- (원천징수 세액)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과 기타 금융투자소득 금액별로 각각 기본공제* 적용 후 원천징수세율(20%) 적용

*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별로 투자자가 각각 하나의 금융회사 선택

** 금융회사는 원천징수세액을 매년 1.10일, 7.10일까지 두 차례 납부

- (원천징수 세액 정산) 상·하반기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이 연간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* 하반기 원천징수시 환급

* 상반기에 소득이 발생하고 하반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

□ **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대주주 범위 현행 유지 (소득령)**

- '23년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등을 고려하여 **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기준 대주주 범위**를 **현행 유지**

* (현행)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주식 **합산 10억 원**, '21.4월 이후부터는 **합산 3억 원**
(개정) '22년 말까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주식 **합산 10억 원**

□ **벤처캐피탈이 유망 중소기업 출자시 세제지원 세부내용 규정 (조특령)**

< 법률(조특법§13의4) 개정내용 >

- ◇ 벤처캐피탈 등이 **소재·부품·장비** 분야의 **유망 중소기업**에 출자시 **주식양도차익·배당소득 비과세**

▸ **소재·부품·장비** 분야의 **유망 중소기업의 범위**는 **시행령에 위임**

- (**유망 소부장 중소기업**) 「**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**를 위한 **특별조치법**」에 따라 선정된 **특화선도기업**으로서 **중소기업**

□ **유턴기업 세제지원의 세액감면 대상소득 규정 (조특령)**

< 법률(조특법§104의24) 개정내용 >

- ◇ **해외사업장 생산량 50% 이상 감축** 요건을 **폐지**하고, **해외사업장 생산량 감축수준에 비례**하여 **세액감면**

▸ **감면대상 소득 계산방법** 등은 **시행령에 위임**

- **세액감면 대상소득 =**

$$\text{국내 신설 사업장의 소득} \times \frac{\text{해외사업장의 매출 감소액}}{\text{국내 신설 사업장의 매출액}} (\text{최대 } 1)$$

2

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·공정 강화

1) 시민·중소기업 지원

□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개편 관련

①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(부가형)

< 법률(부가세법§61) 개정내용 >

◇ 직전연도 재화·용역 공급대가 합계액이 **8천만 원부터 8천만 원의 130%까지**의 범위에서 **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**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**간이과세 적용**

○ (현 행) **4,800만 원** → (개 정) **8,000만 원**

②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(부가형)

○ **실제 부가가치율과 괴리가 큰 업종**을 중심으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시 적용되는 **부가가치율*** 조정(5~30% → 15~40%)

* **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** = 매출액 × **업종별 부가가치율** × 10%

※ 연 매출 4,800~8,000만 원 간이과세자에게 적용(4,800만 원 미만은 납부면제)

현 행		개 정	
구 분	부 가 가치율	구 분	부 가 가치율
1. 전가·가스·증기 및 수도 사업	5%	1. 소매업,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, 음식점업	15%
2. 소매업,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, 음식점업	10%	2. 제조업, 농업·임업 및 어업, 소화물 전문 운송업	20%
3. 제조업, 농업·임업 및 어업, 숙박업, 운수 및 통신업	20%	3. 숙박업	25%
4. 건설업,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	30%	4. 건설업, 그 밖의 운수업, 창고업, 정보통신업, 그 밖의 서비스업	30%
		5.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,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(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), 사업시설관리·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,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, 부동산임대업	40%

* 시행시기: '21.7.1.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

㉓ 간이과세 배제업종* 추가 (부가령)

* 간이과세 제도는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·용역을 공급(B2C)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세원투명성 저해 방지를 위해 B2B 업종, 전문자격사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 배제

- (현행) 광업, 제조업, 도매업, 부동산매매업, 과세유흥장소, 부동산임대업, 변호사·세무사 등 전문자격사는 간이과세 적용 배제
- (개정) 상품중개업, 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 사업, 건설업, 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, 사업시설 관리·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추가

※ 다만, 위의 업종 내에서 최종소비자에 대하여도 재화·용역을 공급하는 일부 세부업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(세부업종은 시행규칙에서 규정 예정)

□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* 적용요건 완화 (부가령)

* 수입시 세관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유예하고, 세무서에 예정(확정) 신고시 정산·납부

※ 「'20년 세법개정안」에서 既 발표('20.7.22.)

-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
 - (중소기업) 수출비중 30%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 원 이상
→ 수출비중 30%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 원 이상
 - (중견기업) 수출비중 50% 이상 → 수출비중 30% 이상

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관련 제도 정비 (조특령)

- (계약유형 추가) 신탁형·일임형 ISA 외에 투자중개형 ISA 추가
- (자산 운용범위) 예·적금, 집합투자증권 등 외에 상장주식 추가
- (소득금액 계산) 이자·배당소득에서 상장주식 양도차손 공제
- (소득증명서류 폐지) 서민형·농어민형 외 일반형(19세 이상) ISA 가입 시 소득증명서류 제출의무 폐지

2) 일자리 지원

□ 생산직 근로자 야간수당 등 비과세 범위 확대 (소득령)

- (현행)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(① 또는 ②)가 받는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비과세(한도: 240만 원)
 - ① 공장·광산 근로자, 어업 종사자, 돌봄서비스 종사자, 운전·운송·청소·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
 - ② 미용·숙박·조리·음식·판매 등 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일정 요건*을 갖춘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
- *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고, 과세표준이 5억 원 이하
- (개정) 생산직 근로자 중 ②에서 사업자 요건을 폐지하고, 대상 직종 범위 확대(텔레마케팅, 대여 판매업,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추가)

□ 산학협력 강화 및 대학생 취업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(조특령)

※ 「'20년 세법개정안」에서 既 발표('20.7.22.)

- (현행) R&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에 위탁훈련비,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재학생 현장실습비 등 포함
- (개정) 인력개발비 대상에 '표준 현장실습학기제' 과정에서 대학생에게 지급한 현장실습비 추가*
- * 「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대학교 등과 사전 취업약정 등을 체결하여 학기제 종료 후 해당 대학생을 채용한 경우

□ 근로·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(조특령)

※ 「'20년 세법개정안」에서 既 발표('20.7.22.)

-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근로·자녀장려금 기준금액을 연 150만 원에서 연 185만 원으로 상향

□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범위 구체화 (소득령)

< 법률(소득법§52, 조특법§95의2) 개정내용 >

- ◇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주택자금 소득·세액공제* 적용
 - * ①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, 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, ③월세세액공제
 - ▶ 구체적인 외국인 근로자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

- 「출입국관리법」·「재외동포법」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으로서 배우자·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 적용

3) 과세형평 제고

□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의 양도세 비과세 · 다주택자 종과 관련 (소득령)

< 법률(소득법§89②, §104) 개정내용 >

- ◇ (종전) 양도소득세제상 조합원입주권(입주권)은 주택 수에 포함하되, 분양권은 주택 수에서 제외
 - ▶ 다만, 일시적 「1주택 1입주권」*에 해당하는 경우는 1주택으로 간주
 - * ①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입주권을 취득하고,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
 - ② 신축주택 미완공 등으로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, 신축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종전주택 양도
- ◇ (개정) 분양권도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
 - ▶ 1주택으로 간주하는 일시적 「1주택 1분양권」의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
- (현 행)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시, 일시적 「1주택 1입주권」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,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과세율(기본세율+10%p) 적용은 제외*
 - * 고가 1주택(9억원 초과)의 경우 9억원 이하는 비과세, 9억원 초과는 기본세율 과세
- (개 정) 일시적 「1주택 1분양권」의 요건(위 표의 ① 또는 ②) · 효과(1세대 1주택 비과세, 2주택자 종과 제외)를 입주권과 동일하게 적용
- ※ (적용시기) '21.1.1.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

□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차액결제거래* 추가 (소득령)

- * CFD(contract for difference) : 투자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(매매차익)만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신종 장외파생상품
- (현 행) 국내·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, 국외 장내파생상품 등*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
 - * CFD는 장외파생상품으로서 과세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현재 비과세
- (개 정) 장내파생상품 · 주식 양도소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과세대상에 국내·외 주식 및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차액결제거래 추가

□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 관련 세부내용 규정 (소득령)

< 법률(소득법§37등) 개정내용 >

- ◇ (가상자산 과세방법) 가상자산의 양도·대여로 발생한 소득* 중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0%의 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
 - * 총수입금액(양도·대여의 대가) - 필요경비(실제 취득가액 등)
- ◇ (의제취득가액) '22.1.1일 전부터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경우 '21.12.31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의제*
 - * 당시 시가보다 실제 취득가액이 더 큰 경우에는 해당 취득가액
- ◇ (비거주자·외국법인) 비거주자·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양도·대여·인출시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*하여 납부**
 - * 원천징수세액 : Min [양도가액×10%, (양도가액 - 취득가액 등)×20%]
 - ** 납부방법 :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은 비거주자의 원화·가상자산 인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일정금액 납부
- ◇ (시행시기) '22.1.1일 이후 양도·대여하는 분부터 적용
 - ▶ 구체적인 과세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

- ① (필요경비)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시 **선입선출법*** 적용
 - *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계산
- ② (시가)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**거래일 전·후 1개월간 공시한 일평균가격의 평균액**
- ③ (의제취득가액) '21.12.31일 당시의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'22.1.1일 0시 현재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
- ④ (비거주자 인출시 납부세액) 비거주자가 원화 또는 가상자산 인출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양도시마다 원천징수한 세액 중 인출비중으로 계산한 금액을 월별로 합산하여 납부

□ 고액·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사유 축소 (국기령, 국징령, 관세령)

※ 「'20년 세법개정안」에서 既 발표('20.7.22.)

- (현 행) 체납액 30% 이상을 납부한 경우
- (개 정) 최근 2년간 체납액 50% 이상을 납부한 경우

□ **현금영수증 의무발행* 대상 업종 확대** (소득령)

*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, 미발급시 가산세 부과(거래금액의 20%)

○ **(현행)**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으로 변호사, 병·의원, 교습학원, 가구소매업 등 87개 업종 지정

○ **(개정)** 자동차 세차업, 기계공구 소매업 등 8개 업종* 추가

* 자동차 세차업, 기계공구 소매업, 건강보조식품 소매업, 벽지·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,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, 중고가구 소매업,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, 모터사이클 소매업

※ (시행시기) '22.1.1.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

□ **전자(세금)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** (소득령, 부가령)

○ **(현행)**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·용역의 **공급가액**(수입금액)이 **3억 원 이상**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전자(세금)계산서 발급 의무 부여

○ **(개정)** 의무발급 대상을 직전연도 **공급가액**(수입금액) **2억 원 이상**으로 확대

* 시행시기: '22.7.1. 이후 재화·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

□ **공익법인의 재산 운용소득 의무사용비율 상향** (상증령)

※ 「'20년 세법개정안」에서 既 발표('20.7.22.)

○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**운용소득**(예: 이자·배당소득)에 대해 매년 **공익목적에 사용**하여야 하는 **최소비율**을 **70% → 80%**로 상향

* 시행시기: '22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□ **특정주식 5% 초과 보유 공익법인 등의 의무이행 신고제도 관련** (상증령)

< 법률(상증법§41의2) 개정내용 >

◇ 발행주식총수의 5%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매년 사후관리 이행 여부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(미신고시 자산총액의 0.5% 가산세 부과)

▸ 신고내용, 신고기한 등은 시행령에 위임

구 분	개 정 안
① 신고 내용	○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* 구체적 제출서류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예정
② 신고 기한	○ 신고대상 사업연도 종료일부턴 4개월 이내

3

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

1) 조세제도 합리화

□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공무원 포상금 추가(소득령)

- 공무원이 공무수행에 따라 국가·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*

* (현행)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은 유권해석에 따라 기타소득 비과세

□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·골동품 양도소득 기준 마련 (소득령)

< 법률(소득법§21) 개정내용 >

◇ 서화·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분

▶ 다만, 사업장을 갖추는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

- 사업장을 갖추거나 서화·골동품 거래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서화·골동품 양도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과세

□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시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 (조특령)

- 부동산 임대소득은 이자·배당소득처럼 근로와 관련성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* 산정시 제외

* 총급여액이 0~3,600만 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0~300만 원 지급 / 현재 총급여액은 근로소득, 사업소득(부동산 임대소득 포함), 종교인소득을 합산하여 계산

□ 투자·상생협력촉진세제* 재설계 (조특령)

* 투자·임금증가·상생 금액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 시 추가 과세(세율 20%)

※ 「'20년 세법개정안」에서 既 발표('20.7.22.)

- ① 투자유인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 포함형 과세방식의 소득환류 기준 강화 : 당기 소득의 65% → 70%
- ② 그 간의 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임금증가 대상 근로자의 범위 확대 : 총급여 7,000만 원 미만 → 8,000만 원 미만

□ **해외금융계좌 신고* 관련 과태료 규정 합리화** (국조령)

*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 초과 시, 매년 국세청에 해당 계좌정보 신고

- **(과태료 상한액 신설)**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시 **과태료 상한액**을 20억 원으로 설정
- **(과태료 감경요건 확대)** 외국환거래 보고시 **과세자료 확보**가 가능한 점 감안, 「**외국환거래법**」 상 **보고**를 한 경우에는 **과태료 감경**(50% 범위 내)

구 분	현 행		개 정	
과 태 료	신고의무 위반금액	과태료	신고의무 위반금액	과태료
	20억원 이하	해당금액의 10%	20억원 이하	(좌 등)
	20~50억원	2억원+20억원 초과 15%	20~50억원	
50억원 초과	6.5억원+50억원 초과 20%	50억원 초과	Min[(6.5억원+50억원 초과 20%), 20억원]	
50% 이내 감경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위반행위의 정도·횟수·동기 감안 · (추 가)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좌 등) · 「외국환거래법」에 따른 해외예금 잔액현황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	

□ **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합리화** (법인령, 소득령)

- **(현 행)** 부당행위계산 부인* 적용시 세법 간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**불일치**

*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특수관계자 간 자산의 저가양도 또는 고가매입 등의 거래시 거래가격과 시가와와의 차액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

- (법인세법) 장내거래의 경우 **거래일 최종시세가액**
 - (소득세법) **양도일 전·후 2개월 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***
- *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양도 시 **20% 할증 적용**

- **(개 정)** 법인세법·소득세법 간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**일치 및 합리화**

- 대량매매 등 또는 장외거래의 경우 : **거래일 최종시세가액**
- 경영권 이전을 수반*하는 경우 : **20% 할증 적용**

* 경영권 이전 관련 구체적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규정

□ **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규정 (총부령)**

< 법률(총부법§9②) 개정내용 >

- ◇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단일 최고세율(3%, 6%) 적용
 - 사업특성을 고려, 일반 누진세율*이 적용되는 법인 유형은 시행령에 위임
 - * (2주택 이하) 0.6~3.0%, (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) 1.2~6.0%

- (개인과 같은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) 공공주택사업자, 공익법인, 건설임대주택사업자, 재건축 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

□ **공익법인 관련 제도 개선 (소득령, 법인령)**

- ① (명칭 변경) 납세자 이해 제고를 위해 **세법간 공익법인 관련 명칭 통일**
: (소득세법)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→ 공익단체
(법인세법) 법정·지정기부금단체 → 공익법인
- ② (지정기간 변경) 공익단체의 공익성·투명성 **관리 강화**
 - (현행) 지정일 이후 **5년간**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인정
 - (개정) **신규 지정시** 지정기간을 **3년으로** 축소하되, 사후관리 결과 공익성·투명성이 확보된 단체의 **재지정시**에는 **6년으로** 연장

※ (시행시기) '22.1.1. 이후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
- ③ (의무 및 취소사유 합리화) 납세협력 부담 완화를 위해 **자료 중복제출 의무 조정***, **공익법인 취소사유 합리화**** 등 정비
 - * (현행) ①결산서류와 ②기부금모금액 활용실적 명세서를 각각 공개
 - (개정) ①을 **표준서식에 따라** 공개한 경우 ② **공개 의무 면제**
 - ** (현행) ①회계감사, ②전용계좌 개설·사용, ③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위반시 취소 가능
 - (개정) ①, ②, ③ **위반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1천만 원 이상 추징시** 취소 가능

□ **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 상향** (증부령)

※ 「'21년 경제정책방향」에서 既 발표('20.12.17)

- **(현 행)**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**6억 원 이하**인 주택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(비과세) 적용
- **(개 정)**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**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기준을 9억 원으로 상향***

*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종과배제 가액 요건은 현행 6억 원 유지

※ (시행시기) 이 영 시행 이후 신규 임대등록한 주택분부터 적용

□ **양도소득세 전자신고시 세액공제 금액 규정** (조특령)

< 법률(조특법§104의8) 개정내용 >

◇ **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***에 양도소득세 추가

* (대상) 종합소득세·법인세(건당 2만 원), 부가가치세(건당 1만 원)

▶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은 시행령에 위임

- **(세액공제액)**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전자신고 시 **건당 2만 원** 세액공제

□ **캠핑카로 개조 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특례 신설**(개소세령)

-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**개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차**를 캠핑카로 개조 시 '**개조 전 차량 가격**'을 **과세표준에서 제외***

* (현행) 과세표준 = 「개조 전 차량 가격 + 위탁공임 + 추가 원재료 가격」

(개정) 과세표준 = 「위탁공임 + 추가 원재료 가격」

□ **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맥주·탁주의 주세율 조정** (주세령)

- 종량세가 적용되는 **맥주·탁주의 세율***을 **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**하여 각각 **1ℓ 당 834.4원 및 41.9원****으로 조정('21.3.1.~'22.2.28. 적용)

* 증류주 등 종가세 적용 주종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물가연동제 적용('20.1.1. 개정된 주세법 시행)

** 현행 세율: (맥주) 830.3원/ℓ, (탁주) 41.7원/ℓ *** '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: 0.5%

□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한 (조특령)

-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 시장조성 종목*을 거래대금 비중, 시가총액, 회전을 등을 고려하여 유동성이 낮은 종목 등으로 제한

* (비과세 대상) 거래대금 비중 또는 시가총액 등이 일정 비중 또는 일정 금액 이하인 주식 또는 파생상품(구체적인 비중·금액은 시행규칙에서 규정)

□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 제외대상 (국기령)

※ 「'20년 세법개정안」에서 既 발표('20.7.22.)

< 법률(국기법 §39) 개정내용 >

- ◇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에서 상장법인을 제외
 - 구체적인 적용 제외대상은 시행령에 위임

- (적용 제외대상) 코스피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

□ 공직퇴임관세사 수입 제한 관련 세부내용 규정 (관세사령)

< 법률(관세사법§13의6) 개정내용 >

- ◇ 5급 이상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관세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수입 제한
 - 국가기관 및 통관업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

- (국가기관 범위) 모든 국가기관(소속기관 별도)으로 하되,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기관 및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관*은 제외

* 파견, 교육훈련, 출산휴가, 징계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국가기관

- (통관업 범위) 관세사 업무인 “통관업”은 원칙상 수입 제한하되, 관세사 자격증 없이도 수행가능한 통관업*은 수입제한 예외 인정

* 수출입신고 상담·자문, 수출입물품 허가·조건의 증명 또는 확인 등

□ 관세사 등의 등록취소 및 징계시 통보·광고방법 구체화(관세사령)

< 법률(관세사법§24의2) 개정내용 >

◇ 관세청장이 관세사 징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관세사회에 통보하고,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 또는 홈페이지에 공개

▸ 통보·공고·공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

- 관세청장은 관세사 징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2주일 이내에 해당 내역을 공개하고 관세사회는 통보받은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
- (공개내용) 관세사의 성명·생년월일·등록번호, 소속법인의 주소 및 명칭, 징계내용 및 사유, 효력발생일
- (홈페이지 공개기간) 등록취소: 3년, 업무정지: 해당 업무정지 기간, 과태료: 6개월, 견책: 3개월

2) 납세자 권익 보호

□ 경정청구에 따라 국세환급 시*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 (국기령)

* 납부 → 납세자의 경정청구(감액 신청) → 과세관청의 경정결정 → 국세환급

- (현 행) '경정청구일 ~ 환급일' 기간에 대해 국세환급가산금(연 1.8%) 지급
- (개 정) '납부일 ~ 환급일' 기간에 대해 국세환급가산금 지급

□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차감*시 가산세 면제 특례 신설 (국기령)

*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차감

-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와 의료비 지출연도가 달라 보험금 수령 후 **종전 의료비세액공제를 수정신고***하는 경우 **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**

* 다만, 보험금 수령연도 귀속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한정

□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 추가 (국기령)

※ 「'20년 세법개정안」에서 既발표('20.7.22.)

- (현 행) 세무조사 전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관련 정보* 통지
* 납세자 인적사항, 세무조사 기간,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조사 사유
- (개 정) 사전통지 항목에 **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 추가**

□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 추가·명확화 (국기령)

※ 「'20년 세법개정안」에서 既발표('20.7.22.)

- (현 행) 세무조사 후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결과* 통지
* 세무조사 대상 세목, 과세기간, 과세 이유, 과세액, 불복 안내
- (개 정) ①과세 이유 기재시 **근거 법령**, 과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**구체적 사실** 적시, ②**가산세 종류·금액·산출근거 추가**

□ 탈세제보 포상금 중간지급 규정 신설 (국기령)

- (현 행) 탈세제보에 따라 과세한 탈루세액을 납세자가 '전액 납부'한 경우 탈세제보자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
- (개 정) 납세자가 탈루세액의 '일부만 납부'한 경우에도 탈세제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포상금 지급 허용(납부된 세액 범위 내)

3) 납세 편의 제고

□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중간예납 제외 (소득령)

- (현 행) 이자·배당·근로·연금 등의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
- (개 정) 중간예납 제외 대상 소득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추가

□ 전자고지 신청시 세액공제 금액 규정 (조특령)

< 법률(조특법§104의8⑤) 개정내용 >

- ◇ 납세자가 납부고지서 전자송달을 신청*한 경우 세액공제 허용
 - * (대상) 중간예납 소득세, 예정고지·예정부과하는 부가가치세,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국세(수시부과하는 경우는 제외)
 - ▶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은 시행령에 위임

- (세액공제액) 납부고지서 1건당 1,000원 세액공제

□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* 대상자료 범위 확대 (소득령)

- * 국세청-행정기관 간 자료 공유를 통해 납세의무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연말정산시 반영
- 연말정산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대상 자료에 공공주택사업자(LH 등)에게 지급한 주택임대료 추가

□ 지출증명서류 합계표* 작성·보관 대상자 축소 (법인령)

- * 납세의무자가 손익계산서 등의 계정과목별로 적격증빙 수취금액을 기재한 서류
- ※ 「'20년 세법개정안」에서 既발표('20.7.22.)
- 적격증빙 합계표를 작성·보관하여야 하는 대상자 범위 축소 : 전년도 수입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법인 → 30억 원 이상

출항시 적재화물목록을 제출* 할 수 있는 탁송품 운송업자 규정(관세령)

* 위해물품 관리 등을 위해 화물을 외국으로 반출시에는 관세당국에 화물목록 제출 의무 부여

< 법률(관세법§136③) 개정내용 >

◇ 출항시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대상자 확대

▸ (현행) 선박회사·항공사 → (개정) **시행령으로 정하는 탁송품 운송업자** 추가

- ①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또는 ②법규 준수도 평가 우수업체 또는 ③직전연도 운송실적이 60만 건 이상인 탁송품 운송업자도 목록제출 허용*

* 선박회사·항공사를 통하지 않고 탁송품 운송업자가 바로 목록을 제출함으로써 **신속 출항 가능**

할당관세 등을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 (관세령, FTA관세령)

※ 「'20년 세법개정안」에서 既 발표('20.7.22.)

- 할당관세, FTA 협정관세를 적용*받기 위해 납세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**주무부처 장관 추천서의 제출기한 연장**

-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→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**15일 이내** 제출

* 절차: (주무부처 장관) 수입자별 수입물량 할당 → (수입자) 운송입항 → (주무부처 장관) 추천서 발급 → (수입자) 할당관세 등 적용 신청(주무부처 장관 추천서 첨부)

원산지 확인 결과를 수입자에게 회신하는 기한 신설 (FTA관세령)

- 수출국에서 통보받은 원산지 확인 결과 및 그에 따른 관세당국의 결정을 각각 **30일 이내**에 **수입자에게 통지**

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허용 (FTA관세령)

- 협정관세 적용 및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**사본 제출 허용**

□ 소득세 표본자료 제공절차 규정 (국기령)

※ 「'20년 세법개정안」에서 기본방향 既 발표('20.7.22.)

< 법률(국기법§85의6⑧) 개정내용 >

◇ 조세정책 연구·평가 지원을 위해 소득세 표본자료* 공개 근거 신설

* 개별 납세자를 직·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한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를 추출하여 표본형태로 처리한 자료

① (요청 방법) 표본자료 이용자가 국세청장에게 문서*로 요청

* 인적사항(성명, 주소), 사용목적, 종류 및 범위, 제공방법 기재

② (제공 방법) 국세청장은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전자매체,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소득세 표본자료 제공

□ 조세법령 알기 쉽게 새로 쓰기

- 국세징수법, 주세법, 국제조세조정법 전부개정('20.12월)에 따라 관련 시행령의 편제·조문순서 개편 및 불명확한 표현 정비

참 고**시행령 개정안(신규) 세수효과 : △1,650억 원**

(단위: 억 원)

구 분	주요 항목	세수효과
증가요인	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시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	+50
	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맥주·탁주의 주세율 조정	+100
감소요인	신성장·원천기술 R&D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	△1,800
합 계		△1,650

* 위 세수효과는 '20년 세법개정안(20.7.22. 발표)에 포함된 세수효과는 제외한 수치임

Ⅲ. 추진 일정

1 개정대상 시행령 : 총 21개

□ 내국세(18개)

- 국세기본법 · 국세징수법 · 소득세법 · 법인세법 · 조세특례제한법 · 상속세 및 증여세법 · 종합부동산세법 · 부가가치세법 · 개별소비세법 · 주세법 · 인지세법 · 교통에너지환경세법 ·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· 농어촌특별세법 · 과세자료제출법 · 교육세법 ·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, 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

□ 관세(3개)

- 관세법 · 관세사법 · FTA 관세법 시행령

2 추진일정

- '21.1.6.(수), 시행령 개정안 발표
- '21.1.7.(목)~1.21.(목), 입법예고
- '21.1.28.(목), 차관회의
- '21.2.2.(화), 국무회의
- '21.2.8(월)~2.12.(금), 공포